



얼굴없는 사진과 초상권

최근 모 신문에서는 꽤 흥미 있는 뉴스를 보도했다. 한 여자대학교와 인근의 남녀공학 대학교 학생들의 옷차림을 비교, 분석하여 기사화한 것이다. 패션이 반영하는 시대와 상황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언론사의 의도였다고 한다.

문제는 그 사진이 몰래 찍은 것이라는 데 있었다. 각 학교에서 200여명 씩 총 400여 명의 학생들 사진을 촬영, 기사화하는 과정에서 학교 측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초상권자인 학생들 일부에게만 동의를 받았다. 패션에 관한 기사인 만큼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얼굴을 제외한 신체 전부가 드러난 사진이었다.

보도가 나간 후, 대상이 된 학생들이 언론중재위원회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다. 물론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신체 전부가 드러나 지인들은 알아볼 수 있었다는 주장이었다. 어떤 학생들은 짧은 치마를 입은 자신의 신체가 드러나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울먹였고, 대학 서열의 잣대로 자신을 비하하는 댓글에 상처를 입었다며 호소하기도 했다.

위 사안에서 우선 문제되는 것은, 얼굴이 나오지 않은 사진도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느냐 하는 것이다. 이른바 초상이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부분이 얼굴이기 때문에, 과연 얼굴 없는 사진에도 초상권이 인정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초상권은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이다. 즉 얼굴은 특정인임을 식별하게 하는 대표적인 요소일 뿐이지 꼭 얼굴이 아니라도 뒷모습, 발 등도 초상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작년 8월, 법원은 “비록 얼굴 부분을 다른 사람의 얼굴로 합성하였더라도 얼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초상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얼굴을 제외하고 신체 전부가 동의 없이 촬영, 공표된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은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다음으로 문제되는 것은 대학 캠퍼스와 같은 개방된 장소에서 수백

명을 촬영할 때에도 일일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동의 없는 촬영으로 인해 초상권을 침해당한 사람의 피해의 정도와, 초상을 공개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었던 공익의 정도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 즉 보도되는 사안 자체가 국민의 알권리와 관련되어 공공성이 있고, 해당 보도에 그 초상을 공개하는 것이 꼭 필요했으며,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언론사가 면책될 수 있다.

과연 이 사건에서 지나가는 여대생들의 옷차림을 찍어 보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성은 무엇일까. 패션이 반영하는 시대와 상황을 알려 주겠다는 언론사의 취지는 좋았으나 기사가 추구하는 가치가 수백 명 학생들의 초상권보다 중요했는지는 의문이다. 게다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며, 그대로 피해자들의 초상을 노출하는 대신에 그래픽으로 처리해 기사화하는 등,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초상권자의 피해를 상쇄시킬 정도로 우월한, 기사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가끔 기자들을 만나면 도대체 이것도 찍지 말라 저것도 찍지 말라, 어떻게 보도를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하곤 한다. 충분히 그 고충을 이해하지만, 일일이 초상권자의 동의를 받고 사진을 게재해야 한다고 해서 취재나 기사 작성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예전에 비해 불편해졌을 뿐이다. 그리고 초상권자의 피해와 비교·형량 해야 하는 대상은 보도로 인해 얻어지는 공익이지 결코 기자 개인의 불편이 아니다. 내가 만약 초상권자 본인이라면 어떨는지, 그리고 이 사람의 사진을 공개하는 것이 보도를 위해 정말 꼭 필요한지 재삼재사 숙고한다면, 애써 보도한 기사가 초상권 논란에 휘말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